

4. 검토의견

-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방법,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군 출연금으로 조성할 것인지
- 답 : 군비 출연금 전액 부담으로 할 계획임.

- 문 :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 검토해 보았는지
- 답 :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음.

- 문 : 현재 상정한 조례안은 도 조례를 우리군 명칭만 바꾸어 제출한 조례안으로 노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, 군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- 답 : 그렇지는 않을 것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3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음.